

홋카이도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2022년 1월 25일

실시내용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제**31**조의**6**제**1**항, 제**2**항 및 동법률 제**24**조 제**9**항에 의거한 요청 등을 행한다.

조치지역

홋카이도 전 지역

기 간

2022년 1월 27일(목)~2월 20일(일)

【도민 및 도내에 체류중인 모든 분들께 드리는 요청①】

요청내용

(일상생활에서)

- ◆ <3미터(밀폐·밀집·밀접)>을 회피하고 <사람간의 거리를 확보>, <마스크 착용>, <손소독>, <환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따른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이나 이동을 삼가하고 주치의나 진료·검진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여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무증상 도민은 검사를 받는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특히 외출시)

- ◆ 혼잡한 장소나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로 외출·이동을 삼가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이나 중증화위험이 높은 사람※과 만나는 경우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고령자, 기초질환이 있는 자, 일부 임신말기 임산부
- ◆ 불필요한 도도부현 간 이동은 절대로 삼가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도민 및 도내에 체류중인 모든 분께 드리는 요청②】

요청내용

(특히 회식시)

- ◆ 변경된 영업시간 이외에는 음식점 이용을 삼가한다.
(특조법 제31조의6 제2항)
- ◆ 홋카이도음식점감염방지대책인증점 등 감염방지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고 감염방지에 느슨한 음식점의 이용은 삼가한다.(특조법 제24조 제9항)
- ◆ 음식점 등을 이용할 때에는 음식점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감염방지대책에 협조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 회식은 4인 이내 등 최소인원, 단시간, 음주는 자제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대화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특히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과의 회식시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홋카이도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협력의뢰】

협력의뢰 내용

- ◆ 국가의 기본적 대처 방침은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은 적극적으로 삼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홋카이도로의 불필요한 방문은 절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의뢰)

【음식점 등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대상시설

- 【음 식 점】 음식점(선술집 포함), 찻집 등(택배·테이크아웃 제외)
- 【유흥시설】 카바레, 코인 노래방 등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및 음식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는 노래방
- 【결혼식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결혼식장 등 (피로연 등을 행하는 호텔 또는 여관 (모임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으로 한정)도 포함)

요청·협력의뢰 내용

【훗카이도음식점감염방지대책인증제도 인증점】 (특조법 제31조의6 제1항)

- ◆①영업시간은 5시~21시까지, 주류판매는 11시~20시까지 혹은
 - ◆②영업시간은 5시~20시까지, 주류판매(이용자의 주류 점내 반입 포함)를 행하지 않는다.
- ※기간 동안 상기 중 하나 선택(선택후 변경 불가)

【상기 이외의 음식점 등】 (특조법 제31조의6 제1항)

- ◆영업시간은 5시~20시까지, 주류판매(이용자의 주류 점내 반입 포함)를 행하지 않는다.
- ◆동일 그룹, 동일 테이블의 입점 안내를 4인 이내로 제한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대상자 전원 검사 및 백신·검사패키지 제도 적용 실시
- ◆업종별 가이드라인이나 감염방지대책 체크리스트 항목을 준수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노래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자주 환기하는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행한다.(특조법 제24조 제9항)
- ◆감염방지 노력을 어필할 수 있는 훗카이도음식점감염방지대책인증제도의 인증을 받도록 노력한다. (협력의뢰)

※요청 사항에 협조해 주신 사업자들에게는 협력금을 지급합니다.

【음식점 등에 대한 협력금】 1월 27일~2월 20일까지 전기간(25일간)협력

(인 증 점)【①의 경우】중소기업·개인사업자: 1점포당 62.5만엔~187.5만엔, 대 기 업: 1점포당 최대 500만엔

【②의 경우】중소기업·개인사업자: 1점포당 75만엔~250만엔, 대 기 업: 1점포당 최대 500만엔

(상기 이외)중소기업·개인사업자: 1점포당 75만엔~250만엔, 대 기 업: 1점포당 최대 500만엔

【이벤트 개최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인원 상한 및 수용률 (※1)

- 인원 상한
5,000명
 - 수용률
[100%이내] 큰 소리 없음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
[50%이내] 큰 소리 있음※2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
〈감염방지 안전계획을 책정하는 경우※3〉
 - 인원 상한※4
20,000명
 - 수용률
100%이내
- ※이벤트 개최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1 인원 상한과 수용률 둘 중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 큰 소리란 <관객 등이 평소보다 큰 성량으로 반복·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필요한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는 이벤트가 “큰 소리 있음”에 해당한다.
- ※3 감염방지안전계획에는 이벤트 개최시 필요한 감염방지대책을 착실히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벤트 마다 기재한다. (참가인수가 5,000명을 초과하는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며, 이벤트 개최 2주전까지 제출)
- ※4 대상자 전원 검사 및 백신·검사패키지 제도 적용을 실시하지 않는다.

요청· 협력의뢰 내용

- ◆영업시간은 **21시까지**(무관객 개최 제외)(특조법 제24조 제9항)
- ◆주류 판매(이용자 주류 점내 반입 포함)는 **20시까지**(협력의뢰)
- ◆이벤트를 개최할 때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특조법 제24조 제9항)
- ◆국가의 접촉확인어플(COCoA) 도입, 명부 작성 등 추적대책을 마련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1월 28일까지 티켓이 판매된 이벤트에 한해 인원상한 및 수용률 등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취소할 필요는 없다.
1월29일 이후에 판매되는 티켓은 인원상한 및 수용률을 만족할 것.

【음식점 이외의 시설(특히 대규모 집합시설)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요청·협력의뢰 내용

시설 종류	시설의 예	요청·협력의뢰 내용
상업시설	대규모 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 물품판매업 점포	<p>◆다음과 같이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한다. (특조법 제31조의6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장자 정리 등 •입장자에게 마스크 착용 주지 •감염방지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자의 입장금지 •대화에 의한 비말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비말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 등 설치 또는 이용자 사이의 적절한 거리 확보 등) 등 <p>◆노래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간 밀접 접촉을 피하고, 자주 환기하는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지킨다. (협력의뢰)</p>
오락시설	파친코, 게임센터 등	
유흥시설	성풍속점, 경마 투표권 발매소, 경마장(차·배)매표소 등	
서비스업	큰 목욕탕, 에스테틱살롱 등 서비스 점포	
극장 등	극장, 관람장, 영화관, 플라네타늄 등	
집회·전시시설	집회장, 공회당, 전시장, 대여강의실, 문화회관 등	
호텔·여관	호텔, 여관(모임 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한해)	
운동시설 오락시설	야구장, 육상경기장, 스포츠클럽, 테마파크, 유원지 등	
박물관 등	박물관, 미술관 등	

【사업자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요청· 협력의뢰 내용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직장에서는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 <3밀> 회피를 위한 행동을 철저히 한다. 특히 직장에서는 “위치 변경”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등)에 주의 또한 <감염위험이 높은 “5개 장면”>을 피하기 위해 애쓴다. (협력의뢰)
- ◆직장 출근 등과 관련해서는 유동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재택근무(텔레워크)를 활용하거나 휴가를 권장하는 등 출근자 수를 줄이도록 애쓰는 한편, 출근시에는 접촉 기회가 감소하도록 시차출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협력의뢰)
- ◆도민생활·도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이들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자는 <3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포함,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한편 감염자나 밀접접촉자가 발생해 결근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를 계속한다. (협력의뢰)
- ◆사업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계속계획(B CP) 점검, 책정 등 사업계속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둔다. (협력의뢰)

【공립시설】

공립시설

-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해 지역 감염상황에 따라 입장자 정리 등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킨다.

【학교에 대한 요청】

요청내용

- ◆ 위생관리 매뉴얼에 의거해 학교교육활동, 학생 기숙사의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시행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가족의 감염상황을 즉시 파악해 학급·학년·전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조치를 실시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으로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는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 집단숙박행사(수학여행, 숙박학습) 등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은 실시를 신중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의향이나 여행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단, 도외의 긴급사태 조치구역이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지역은 여행지로 삼지 않는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 부활동은 엄선(시간, 인수, 장소, 활동내용)해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 후, 실시하고 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한다. 또한 건강상태를 다중 체크하고 감염방지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하며 대회 참가는 교장의 판단 하에 실시하고 주최자 등의 감염방지대책을 엄수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는 감염방지와 대면·온라인수업의 효과적인 실시 등에 의한 수학 기회의 확보의 양립을 위해 적절히 대응한다. 또한 학외 활동 등과 관련한 감염대책이나 학생 등에 대한 주의 환기를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